Australian Government |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대외 활동 기준

거버넌스 기준 외에도, 호주 밖에서 활동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보내는 모든 자선단체는 '대외 활동 기준'이라고 하는 4가지 규정을 더 준수해야 합니다. 소액의 자금만 해외로 보내는 자선단체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단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본 종교 자선단체'로 분류된 자선단체도 대외 활동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외 활동 기준 1은 자선단체가 해외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호주 밖에서 활동할 때 자선단체는 교육, 종교, 환경 보호와 같은 자선 목적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며, 계속해서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즉, 자선단체가 얻는 모든 자금은 자선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자선단체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자금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선단체는 자금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책임 있게 사용하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노예제, 인신 밀입국, 뇌물 수수 등의 문제를 다루는 호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외 활동 기준 2에 따르면 자선단체는 해외 활동과 해외 자금 사용 내역에 관한 기록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같은 재무 정보와 자선단체의 활동과 같은 운영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가 해외 파트너나 기타 해외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그러한 관계에 관한 기록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자선단체가 각 국가에서 어떠한 활동을 어디에서 수행했는지, 자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명확하게 요약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기록은 다른 언어로 작성해도 되지만, 필요한 경우 영어로 쉽게 번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외 활동 기준 3은 부패와 사기, 뇌물 수수 위험을 줄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선단체는 사기와 부패,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정책과 이해충돌을 관리하는 절차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선단체가 해외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해당 기관도 사기와 부패를 방지하고 이해충돌을 관리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외 활동 기준 4는 자선단체가 해외에서 활동할 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자선단체가 지원하는 사람들과 해당 단체에서 일하거나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나이, 질병, 장애, 트라우마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누구나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자선단체는 모든 활동에서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13 14 50번으로 전화하여 ACNC 전화 13 22 62번으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